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지침

제정	2012. 5. 18
제1차 개정	2013. 4. 10
제2차 개정	2014. 6. 2
제3차 개정	2014. 9. 23
제4차 개정	2014. 12.30
제5차 개정	2016. 2. 29
제6차 개정	2017. 4. 28
제7차 개정	2017. 6. 20
제8차 개정	2017. 7. 12
제9차 개정	2018. 3. 12
제10차 개정	2019. 4. 5
제11차 개정	2020. 6. 5
제12차 개정	2021. 9.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정관」 제50조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절차와 사용료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5>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2. “시설토지”란 제1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와 이에 부속

되는 토지를 말한다.

3. “용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를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5. “시설관리자”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관할하는 지사장, 사업단장을 말한다.
6. “시설관리담당자”란 시설관리자의 지정을 받아 각 관할구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목적 외 사용”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용허가”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공사가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본사 주관부서”란 사용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무단점용”이란 시설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체시설”이란 기존의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기능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되어 대체가 가능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12. “영농”이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단년생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정평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공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

항에 따라 사용허가와 관련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시설관리자의 의무) ① 시설관리자는 관할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본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 점용·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타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공사 자산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수면사용 시설에 대하여 허가 및 계약조건 이행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확인·점검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분장) ① 업무분장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는 「직제규정」, 같은 규정 시행세칙 및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설관리자 소속의 사용허가 업무 주관부서와 계약업무 주관부서 간 사용허가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부서 간 업무분장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자가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전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①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21. 9. 30>

1. 다년생식물의 식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 양식어업 중 시설관리자가 수질악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IV등급(이하 “허용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연평균)하는 경우.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그치지 아니하다.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낚시업을 목적으로 수면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5. 시설관리자 이외의 부서장이 사용허가 제한을 요청하거나, 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보호, 기능 유지 또는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6. 공사의 임직원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만, 주거 및 생활에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제외

7. 신청자의 목적 외 사용으로 타인의 권리나 재산권 침해, 분쟁 유발 또는 민원 발생 우려가 현저하여 사용허가가 곤란하다고 시설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

8.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의 지하매설물 또는 진·출입로 등 설치 목적으로 시설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다만, 사용자가 분양계약서에 사용허가 관련 권리·의무 사항을 입주자 분양조건으로 명시하고, 향후 입주자 자치 의결기구 등의 관리규약에 규정하여 분양 또는 사용기간 만료 후에도 선량한 시설관리 및 계약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시설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용허가 신청 전의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전년도 말 안전점검 결과 D등급(종합평가 등급) 이하로서 보수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시설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단, 수면사용에 한한다)

10. 공공용 사업에 필요하거나 공사 자체사업 추진 등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 다만, 신재생에너지 자체사업지구로 계획된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1. 해당 시설의 재산세 부과액이 사용허가 사용료를 초과하여 시설관리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시설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

② 삭제 <2020. 6. 5>

③ 삭제 <2020. 6. 5>

④ 건물의 사용허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속한 부속시설 중 시설물 보호 및 유지관리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관리사에 한한다.

⑤ 삭제 <2020. 6. 5>

⑥ 삭제 <2020. 6. 5>

제7조(현황 관리 및 보고) ① 시설관리자는 관련 직원이 언제나 정확한 자료를 열람·분석·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용허가 및 계약업무 처리내역을 지체없이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 Apass(사용허가)”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사용계약 사항을 별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반기별 1회 이상 보고하고, 지역본부장 및 사업단장은 반기 다음 월 10일까지 본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면사용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를 반기 다음 월 10일까지 본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사용허가 절차

제8조(사용허가 신청) ① 시설관리자는 사용허가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필요한 경우 Compact Disc(CD)로 요구)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설계도서 등 구비서류 포함)·방법 및 기간
4.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시설관리자는 전주, 통진주 등 사용면적이 10㎡이하의 경미한 사항의 사용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간소화 할 수 있으며 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시설관리자가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징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2>

1. 전주, 통진주인 경우 :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위치도(위치나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위성사진, 지적도 등), 표준시공도

2. 그 밖의 경우 :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위치도

③ 시설관리자는 용수(골프장 용도에 한함)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민원예방을 위해 신청자에게 수혜구역 내 농업인 대표, 골프장 인근의 이해관계자 대표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협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관리자 이외의 부서장이 목적 외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3과 별표4의 사용목적에 따라 해당 시설관리자의 검토의견을 조회하여 그 결과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소관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선정) ① 시설관리자는 수면사용(부속토지 포함한다) 또는 1개의 미사용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사용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토지 및 수면사용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시설물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 또는 계약 후 사용자로부터의 문제제기가 없도록 입찰 전에 사용허가 대상사업의 인·허가 기관에 동 사업시행의 제약조건 또는 인·허가 가능여부를 문의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1. 수면사용 이외의 시설토지와 용수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가 1명 또는 1개 법인일 경우
3. 수면사용을 하고자 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국가 등의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대책 차원에서 수면사용을 허락한 경우

나. 목적 외 사용을 하고자 하는 수면에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이 공동이익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구성하여 관할 지자체 장에게 통지한 후 수면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 1)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총회회의록, 어업계원명부 등을 제출받아 관할 지자체에 통지한 내용과의 동일 여부를 확인
- 2) 내수면어업계의 정관변경 및 대표자변경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조치
- 3) 시설관리자는 내수면어업계가 1) 또는 2)를 위반하거나 내수면 어업계가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해당하여 해산된 경우 시설관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관광지내 지역주민과 수해농업인 50명 이상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수면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지역주민과 수해농업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이 소재하는 해당 리·동에 수면사용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라. 시설관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쟁 입찰을 할 경우 공사 수익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한 경우

- 1) 현 계약서 내용 중 수면에 시설물 설치 및 운영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
- 2) 수면사용 계약서에 계약종료 시 공사가 현 시설물을 매수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마. 수면사용 신청자가 수면사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부지(유지)나 진입로 등이 없어 수면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면사용 신청자가 저수지 시설부지 밖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전세권·지상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수면사용 위한 토지를 확보하여 수면만을 사용할 경우

바. 당초 허가된 사용이유와 규모 변경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

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되고,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제116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인가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6)에 따라 사용료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수면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 1) 시설관리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명부 등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제출받아 설립인가 시 내용과의 동일 여부를 확인
- 2) 사회적협동조합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합병 및 분할)」에 따른 사항, 정관변경, 대표자변경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조치
- 3) 시설관리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1)또는 2)를 위반하거나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해산)」에 따라 해산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 이 지침 이외의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경쟁입찰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www.onbid.co.kr)를 이용하여 공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입찰서의 제출·접수, 개찰 및 낙찰선언 등 입찰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⑥ 경쟁입찰의 경우는 낙찰자, 수의계약의 경우는 신청자를 사용자로 한다.

⑦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대상으로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입찰 공고 전에 지역본부장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⑧ 시설관리자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자 이외의 부서장이

직접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운영규정」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허가) ① 시설관리자는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3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별표 2의 사용허가 절차를 준수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사장은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은 별표 3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1. 1천제곱미터 초과 시설토지 사용(영농 목적 및 농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2. 수면사용(부속시설의 토지 포함)
3. 용수사용(최초 허가 및 변경허가, 골프장 재허가를 포함하며, 물 수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제6조제1항제8호 단서조항에 따른 공동주택 진입로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③ 제8조제4항의 경우 본사 주관부서의 장은 별표 3과 별표 4의 사용 목적에 따라 검토하여 소관 이사의 승인을 받고, 신청부서의 장과 시설관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 ④ 지사장이 지역본부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그 부속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관리자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 ⑤ 시설관리자가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6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 시설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 ⑥ 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보호관리 및 민원발생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조건과 부대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 ⑦ 시설관리자는 사용기간 갱신(기 허가된 사용목적, 사유·규모 등의

변경 없이 갱신하는 것을 말한다)을 원인으로 재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및 구비서류 등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⑧ 시설관리자는 기 허가된 사용목적, 사유·규모 등의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받아 제1항에 따른 신청서 검토 및 허가절차에 따라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지역본부장 승인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1. 사용목적을 변경할 경우
2. 당초 허가된 사용면적을 초과하는 규모의 증가분이 발생할 경우. 다만, 최초 허가면적 대비 10% 이하의 경미한 증가는 제외한다.

⑨ 지역본부장 및 시설관리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재허가 등의 사용허가 처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의 Apass(사용허가)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⑩ 지역본부장은 중점관리 지정 저수지에 대한 수면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질분야 직원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승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⑪ 시설관리자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용허가의 경우 제34조의 사용허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시설의 특성, 주변지역의 민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용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 범위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1. 저수지 : 만수면적의 10% 이내
2. 담수호(조류지 포함) : 만수면적(관리수위)의 20% 이내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지역본부 또는 사업단에 설치된 사용허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항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제10조의 2(사용허가의 취소)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계약 체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2. 사용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사용허가 후 1년 이내에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했을 경우(총 발전설비 3MW 초과 시에는 조정 가능)
3. 사용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4. 행정기관에서 영업, 개발행위 등에 대해 신고·허가·인가 등을 취소 또는 불허한 경우

[본조신설 2020. 6. 5]

제11조(신청서 등 검토·보완·불허가 등) ① 본사 주관부서장과 지역 본부장, 시설관리자는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내용의 합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별표 3과 별표 4의 사용목적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관리자 검토서를 준용하여 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보완기간·사유를 명시하여 보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가 보완기한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설관리자는 불허가 예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2차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고, 2차 보완기한이 지나면 신청자에게 목적 외 사용 불허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한은 신청자에게 보완요청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④ 시설관리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내용을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용허가를 할 수가 없을 때에는 관련 법령 및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불허가 사유를 명기하여 제13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신청자에게 별지 제6의2호 서식의 불허가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⑤ 불허가 통보 후 신청자가 신청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해당 사실의 기록 및 사본을 남겨두고 원본을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시설토지의 공동 사용) ① 시설관리자는 시설토지를 공장이나

주택 등의 진입로 용도로 사용허가 할 경우 사용자가 사용료 납부, 대체시설 설치 및 비용의 투자 등을 이유로 타인의 통행 등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규 또는 재허가로 공동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사용료를 공동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사용료 산출 시 기부채납(대체시설이나 기타 물건의 소유권을 시설관리자에게 무상으로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대체시설의 설치비는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제13조(사용허가 처리기간) ① 사용허가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개정 2020. 6. 5>

1. 시설관리자 : 사용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16일 이내

2. 지역본부장 : 시설관리자의 승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

2. 사용허가의 성질상 설계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등 전문적인 검토를 요하는 경우 그에 드는 기간

3. 질병, 장기여행, 연락두절 등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4. 우편에 의한 신청, 통보 등 우편송달에 드는 기간

5.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개최에 드는 기간

6. 행정기관의 의견, 사실관계의 확인 등에 드는 기간

③ 시설관리자는 부득이하게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 또는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처리기간 단축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감정평가) ① 시설관리자는 사용료 산출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사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감정평가를 요청하거나, 사용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하여 감정평가 할 것을 요청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사용료 산출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감정평가 결과 직전 계약의 사용료보다 현저한 (1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사업단은 본사 주관부서에, 지사는 지역 본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재 감정평가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서 작성) ① 시설관리자는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시설관리자가 사용허가 시 제시한 허가조건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표시는 공부상 지번으로 표기하고 관리지번(가지번)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번에 병기하고 도면을 첨부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의 내용이 별지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성격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며, 시설관리자가 사용허가의 성격·내용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④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2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별지 제19호 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시설관리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경우,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측량성과도 제외에 따른 향후 토지경계 문제 등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제16조(계약기간 등) ① 사용계약 기간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31조제5항 따른 사용기간을 준용하며, 사용기간 갱신은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당초 허가된 사용이유와 규모변경 없이 수면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목적으로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그 갱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5>

1. 현 사용자가 수면에 공사가 허가한 시설 및 공사가 인정한 자원 조성, 사용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투자한 투자비(공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시설투자비용 등은 제외)를 계약기간에 회수하지 못하여 계약종료 시 손실을 보게 되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근거자료를 붙여 사용기간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 당초 계약을 포함하여 총 계약기간 10년 이내

2.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설치한 설비의 사용(운용)기간이 남아 사용기간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 당초 계약을 포함하여 총 계약기간 20년 이내

② 삭제 <2017. 4.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사용허가는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설관리자는 사용계약 체결 시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을 계약종료일로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한다.

⑤ 시설관리자는 사용자에게 계약기한 종료 3개월 전에 계약기한 만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 목적의 토지사용은 계약기한 종료 통지 전에 시설관리자와 사용자간의 확인으로 제10조제8항과 같이 사용 기간만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기한 종료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업무 처리기간 등) ① 계약업무 주관부서는 사용허가 업무 주관부서에서 사용계약 체결을 의뢰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선납의 경우는 사용료 납부를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사용 허가의 경우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시설관리자에게 허가증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업무처리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서류의 미비 등으로 계약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 공개경쟁 실시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입찰공고 기간
3. 선납 사용료를 납부치 않아 지연되는 기간

③ 계약업무처리 기간의 계산은 제13조제1항 각 호 이외의 후단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의 2(사용계약의 해지)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1. 사용자가 사용허가 된 시설 및 사용에 대한 권한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
2.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사용자가 사용계약 후 다음 각 목의 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 시설 토지, 영농, 수면, 용수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나. 건물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 계약 체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발전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총 발전설비 3MW 초과 시에는 조정 가능)

5. 사용자가 사용허가 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관리자가 계약해지를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0. 6. 5]

제18조(임대보증금) ① 시설관리자는 수면의 사용허가와 신재생에너지 용도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동안의 채권확보를 위해 계약체결과 동시에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공사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총 계약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미리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라 한다)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공사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그 밖에 담보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시설토지 및 건물의 사용자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연간 사용료를 분납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④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수면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허가 후 시설관리자가 채권 확보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채권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증서 징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약금) ① 시설관리자는 사용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거나, 별지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간 사용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의2제3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 경우 1년 이내에는 연간 사용계약 금액의 10%, 2년 이내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의 일반임대차 전환) ① 사용계약 기간 중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폐지 될 경우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은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나머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허가 목적물에 대해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21조(건축물등의 소유권 이전시 조치) ① 시설관리자는 사용자가 건축물의 건축,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 사용 하는 중 건축물등의 소유권을 인수받은 제3자(이하 “인수자”라 한다)에게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건축물등의 인수를 받은 인수자에게 시설관리자와 사용기간의 사용계약 사실 및 계약내용 고지
2. 사용자는 인수자가 목적 외 사용을 하기 위하여는 시설관리자에게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을 고지
3. 인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인수자로 하여금 공사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함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인수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위약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건축물등의 소유권 이전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 또는 실제 사용일까지 사용료 납부 등 시설관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아 시설관리자와 인수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인수자가 사용허가 임대차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무단사용 할 경우

제3장 사용료 징수

제22조(수입금액 산출) ①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총수입금(필요한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소득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산출
2. 사업계획서의 수입금이 과소 또는 부실하게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보완·제출하게 하고 보완·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수입금의 증빙자료, 세무서 등에 제출한 자료, 세금부과액 또는 농축수협 판매자료 등 조사 가능한 자료와 해당 지역 생산량, 수역별 평균 생산량 및 단가 등을 조사하여 반영

② 시설관리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 수입금액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여 수입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사업연도 중에 사용자로 하여금 수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시 현장 참석 등을 실시하여 수입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조사 결과는 수입금 산출시 반영하여 수입금이 과소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차년도(계약기간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한 경우 제외)부터의 사용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수입금으로 사용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최근년도의 수입금을 적용하여 산출
2.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
3. 생산물시가로 사용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최근년도의 생산물시가(별도산식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를 적용하여 산출
4. 공개경쟁으로 사용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적용

5. 감정평가금액으로 사용료를 산출한 경우에는 매년 감정평가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관리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출 가능. 다만, 3년 경과 후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출

⑥ 사용료는 일원단위에서 절사하고 용수단가의 산출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적용하고 그 미만은 절사한다.

제23조(영농사용료 산출 등) ① 영농사용료의 경우는 통계청 농업통계 정보(국가통계포털 KOSIS : www.kosis.kr) 또는 시·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산출한다. <개정 2020. 6. 5>

1. 벼 재배의 경우

<사용료(원) = 임대면적(㎡) × 평균생산량(kg/㎡) × 전년도 정부 공공비축미 지역별 매입가격(원/kg) × 0.1>

가. 평균생산량 : 해당지역 단위면적당 최근 5년 동안의 조곡 평균 생산량

나. 전년도 정부 공공비축미 지역별 매입가격 : 조곡 2등급 기준으로 각 시·군 지역농업협동조합 RPC의 매입가격 및 위탁영농조합에서 판매되는 가격

2. 벼 이외 작물의 경우

<사용료(원) = 임대면적(㎡) × 평균생산량(kg/㎡) × 가격(원/kg) × 0.1>

가. 평균생산량 : 통계청 발표 최근 5년 동안의 평균생산량

나. 가격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표 작물별 중품 평균가격(최근 5개년간의 연간 평균치중 최고치,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말한다)

다. 통계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표되지 않는 작물의 경우에는 부류별 대표작물의(채소류는 배추, 특용작물은 참깨) 가격 및 생산량으로 적용

라. 다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작물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사용료 산출

3. 포획·채취 등을 통해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가.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생산물 시가(時價)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사용료 산출

② 수해 및 영농여건이 열악하여 수확량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입증·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수확량을 조사하여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내용과 다른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실제 재배작물로 사용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④ 여러가지 작물을 복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작물을 기준하여 산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종 ~ 3종의 대표작물 선정하여 평균가격으로 산출한다.

⑤ 사용료 선납의 경우 전년도 산출가격에 한국은행 발표 전년도 물가상승율을 적용 산출할 수 있다.

⑥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을 1차년도 사용료로 하고 이후 계약기간 중 연차별 사용료는 낙찰금액을 지속 적용하되 계약 종료되어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24조(시설토지 사용료 산출 등) ① 시설토지 사용료 산출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20. 6. 5>

1.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수입금으로 사용료를 산출하는 경우 “총 수입금”은 필요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소득총액을 적용하며 세부 사항은 제22조에 따라 산출

2. 영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의 공시지가로 사용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

< 사용료 = 사용면적(㎡) × 사용토지 공시지가 × 5/100 >

3. 삭제 <2021. 9. 30>

4.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및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 등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

가. 공사준공 전 : 터파기면적(㎡)×공시지가(감정평가액 등)×5/100

나. 공사준공 후 : 관로 등 지하매설물 사용면적(㎡)×공시지가(감정평가액등) × 5/100. 다만, 가스관, 송유관 등 위험시설물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의 직경 좌·우 30cm 범위 이격 거리 또는 안전시설 [(부식방지철판(보호판)] 을 설치하도록 한 경우 그 면적까지 포함한다.

5. 옥외간판, 가로등, 철탑, 전주, 통신주 등 영 제32조제1항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산출

② 시설토지의 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며, 같은 호 전단의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시설토지가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 상황의 토지로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말한다)의 공시지가”란 인근에 있는 3필지 이상 5필지 이하의 공시지가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6. 5>

③ 영 제32조제1항제3호 후단의 “감정평가비용이 연간 예상경비정수액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란 감정평가비용이 예상되는 연간사용료의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을 1차년도 사용료로 하고 이후 계약기간 중 연차별 사용료는 낙찰금액을 지속 적용하되 계약 종료되어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을 준용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용도의 사용허가의 경우 제26조제1항제4호 나목을 준용한다.

⑤ 계약단위가 1년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25조(건물 사용료 산출 등) ① 건물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출은 감정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료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인근 임대차료를 사용료로 한다.

③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약한 기간이 종료한 후 재계약 할 경우 사용료 산출은 제22조제5항제5호를 적용한다.

④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을 1차년도 사용료로 하고 1차년도 이후의 사용료에도 이를 적용하되 계약 종료되어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을 준용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용도의 사용허가의 경우 제26조제1항제4호 나목을 준용한다.

⑤ 계약단위가 1년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⑥ 건물의 사용허가에 따라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 관련 비용은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6조(수면 사용료 산출 등) ① 사용료의 산출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을 1차년도 사용료로 하고 1차년도 이후의 사용료에도 이를 적용.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낙찰금액이 아닌 낙찰률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

2.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수입금으로 사용료를 산출하는 경우 “총수입금”은 필요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소득총액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제22조에 따라 산출

3.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용료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출

가. 수면으로서 법적 제약 및 현 계약서상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수익계약 할 경우나. 제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익계약 할 경우. 다만 제9조제3항제3호 바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수익계약 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4. 경쟁입찰을 한 후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사용료 산출하며 갱신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용(이후 사용기간 갱신시 동일하게 사용료 산출 및 적용)

가. 제16조제1항제1호의 경우 : 낙찰금액에 한국은행 발표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출(직전 계약기간 물가지수 누계)

나. 제16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영 제32조제1항제1호를 준용

5. 사용료 감정평가 금액에 필요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시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경비 = (감정평가수수료, 입찰등록수수료, 낙찰수수료 등)÷계약기간(년)>

② 계약단위가 1년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27조(용수 사용료 산출 등) ① 용수 사용료 산출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20. 6. 5>

1. 용수의 사용단가 산출 방법

가. 산출기준 :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는 용수공급에 따른 추가비용 등 발생시 사용자와 협의하여 용수사용료를 조정, 결정할 수 있다.

나. 전년도 소요경비 산출 : 별지 5호서식에 따름

다. 산출산식 및 예시

(1) 사용단가(원/㎥) = { E / (A × C) } ÷ V

A : 지사관리면적(ha)

C : 10(면적환산계수)

E : 소요경비(별지 제5호서식)

V : 600(10a당 단위저수량)

(2) 단가산출 예시(소요경비 : 2,000,000천원, 수혜면적 : 5,000ha의 경우)

<사용단가 = {(2,000,000,000÷(5,000ha×10))} / 600 = 66.67원 /㎥>

2. 사용량 검침을 위한 조치사항 및 검침 방법

가. 시설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용수공급 시설에 대하여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취수장 등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공업표준규격, 공인된 국제공업표준규격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의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계량기의 설치·개조·수리·검정·교정 등에 대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계량기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검정을 필한 계량기로 교체 하여

야 한다. 다만, 공인기관의 재검정을 받아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 사용자와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용수사용량의 검침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의 교체·수리·요금단가 변경 등 필요시에는 수시로 검침한다.

마. 검침은 시설관리자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자 참석 하에 실시하고 계량기록은 사용자 날인을 받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바. 라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물량이 연간 2만톤 미만인 경우 분기별로 검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매월 말일 기준 계량기록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용수의 사용단가는 전년도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매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③ 용수공급 시설에 대하여는 농업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1. 시설관리자는 관개전반기(4~6월)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용수 공급량을 줄여 공급 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 기준 평년저수율의 60% 이하일 경우 용수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생활용수와 하구담수호에서 공급하는 용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평년저수율의 40% 이하일 경우에는 시설 관리자의 판단 하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급량을 줄여 공급 할 수 있다.

제28조(사용료의 수납) ① 사용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마다 1년분 사용료를 일시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미리 일시납부 하게 할 수 있다.

1. 1년분 사용료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인 경우로서 사용자와 협의한 경우(현지조사 소요비용은 공사 3급 직원 당일출장여비를 기준으로 한다)

2.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의 사용료 전액을 일시납(선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고 제18조제3항에 따른 채권 확보가 된 경우에 한하여 연간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기간은 반기 또는 분기 단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④ 시설토지 영농의 경우에는 농업인이 후납을 신청하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후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의2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및 납부기한을 명시한 지급 이행 각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사용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신재생에너지 및 용수사용료는 발전량·용수사용량 계량결과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를 납부일로 한다.

⑥ 계약단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에 비추어 보아 계약기간 내 계약목적 을 달성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사용료의 조정) ① 시설토지 및 용수 사용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연도의 사용료 단가가 전년도 사용료 단가보다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9. 30>

1. 영농 사용허가의 경우 전년도 사용료 단가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감소)한 경우(재계약의 경우를 포함): 전년도 사용료 단가보다 5퍼센트 증가(감소)한 단가 적용. 단 재배작물이 변경되는 경우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2. 용수 사용허가의 경우 전년도 사용료 단가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감소)한 경우(재계약의 경우를 포함): 전년도 사용료 단가보다 9퍼센트 증가(감소)한 단가 적용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용허가의 경우: 전년도 사용료 단가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감소)한 경우(재계약 경우 최초 차수 계약은 제외): 전년도 사용료 단가보다 9퍼센트 증가(감소)한 단가 적용

② 용수 사용자가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기능을 개선하여 기존 계획 저수량 이상을 확보하고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단가 이하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3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설관리상의 필요, 시설관리자의 관리 잘못, 홍수·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용목적 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사유 발생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함을 원칙으로하며, 제45조에 따른 무단 점용료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② 영농을 목적으로 사용계약한 자가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공사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의 농지임대차사업 임차료 감면기준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수확하기 전에 감면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사용자 참석 하에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③ 시설토지, 수면, 용수사용자가 영 제32조제2항 및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시설관리자가 이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별표 5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용료를 줄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생산활동을 목적으로 시설물 또는 시설토지를 임차한 후 생산활동에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료 감면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의3호 서식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감면신청 사유 등을 검토한 후 감면 여부를 결정·통지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사용자가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설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목적 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허가일로부터 기산한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31조(납입고지·독촉) ① 2차년도부터 부과 되는 사용료의 납부고지

는 납부기한 30~15일전까지 사용자에게 별지 7호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고지 받은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독촉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로 한다.

1. 제1차 납부독촉장 : 사용료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
2. 제2차 납부독촉장 : 제1차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
3. 제3차 납부독촉장 : 제2차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 이 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 발부

제32조(연체료 부과) ①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에 연체료를 명시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② 연체료는 사용료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의 지연 사용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연체료 = 납부지연 사용료 × (연체일수/365) × 연체이자율> <개정 2021. 9. 30>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10%

③ 시설관리자는 3차 독촉장을 발급하였음에도 그 기한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민사상의 채권보전절차(지급명령, 가압류, 가처분)를 이행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6. 5>

제33조(수입금의 관리) 사용료 등 수입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장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제34조(설치 및 구성) ① 시설관리자 및 지역본부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사항에 대한 합법성,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본부장, 사업단장, 지사장으로 하고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공사 내부 직원 외에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외부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5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사용허가의 규모,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 민원발생 여부, 허가 및 부대조건, 업무처리 이의 제기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 안전에 대한 심의(서면심의 포함)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1. 수면 및 용수의 사용허가
2. 시설토지 사용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진출입로와 영농 사용 목적은 제외 할 수 있음)
3. 사용료 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4. 사용허가에 따른 권리·재산권 침해, 분쟁유발, 민원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6. 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장 승인사항의 경우 심의의 중복 방지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지사 사용허가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경우 지역본부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수질보호

제37조(수질검사) ① 시설관리자가 수면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면사용자로 하여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농어촌용수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시료의 채취 시 시설관리자는 사용자 및 지역주민(수질관리협의회 등) 참석 하에 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취된 측정시료에 대한 수질검사 의뢰는 시설관리자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국가수질측정망에서 제38조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을 포함하는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수질검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에서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가 공사의 수질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사용자 및 주민(주민대표 등)이 공동으로 물 시료를 채수하여 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와 사용자는 수질검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8조(수질검사 항목) ① 제37조에 따른 수질검사는 총유기탄소량(TOC),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량(SS), 수소이온농도(pH), 클로로필a(chl-a) 등을 실시하고, 사용허가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사용자에게 추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자는 자체수질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수면에 대한 수질검사(수질측정망조사, 전수조사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수면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자체 수질조사 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수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금속 오염 : 납(Pb), 카드뮴(Cd), 비소(As), 구리(Cu), 수은(Hg), 아연(Zn)
2. 유류오염 : BTEX(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TPH(Total Petrollum Hydrocarbon)

② 위 제1항 본문의 수질검사는 연 4회(분기별 조사)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하며, 동 제1호의 중금속 항목과 제2호의 유류오염 항목 포함 검사는 연 1회(상반기)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 (수질검사 비용부담) 제37조제1항·제4항 및 제38조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0조(수질유지 및 관리) ① 시설관리자는 수면의 사용허가 대상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1. 수면 사용자(전체)를 대상으로 1회 수질환경 교육 실시
2. 제37조·제38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연평균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수질이 IV 등급(이하 “허용수질기준”이라 한다)을 2년 연속 초과하여 수질오염이 심각한 경우에는 수질개선방안 마련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환경 교육 중 1회는 「수질오염사고 위기대응매뉴얼」 및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실시하며, 수면 사용의 종류를 고려한 적정한 내용의 교육이 되도록 한다. 교육 실시 결과는 반기 다음 월 10일까지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 6. 5>

③ 시설관리자는 수면을 목적 외로 사용 중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수질이 계속하여 2년간 허용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수질기준을 달성할 때까지 휴식년제 실시 등의 수질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휴식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기간 만료 전 사용자에게 계약만료 후 허용수질기준을 달성할 때까지 휴식년제 실시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41조(환경정화) ① 시설관리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임대시설의 수질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환경정화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수질이 계약 전 연평균 수질에 비해 악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환경정화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후 이를 철저히 준수토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 임대 불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임대시설주변 환경정화 계획
2. 수질오염감시활동 계획
3. 낚시업 또는 내수면어업의 경우 어류먹이 투입량 저감계획 등
4. 수상좌대가 설치된 시설의 경우 분뇨(糞尿) 등 처리 계획
5. 내수면어업(면허·허가) 중 자망, 각망, 삼각망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후관리 및 폐어망 수거계획 등
6. 유류 유출 방지 계획 등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정화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며, 지역본부장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수면사용 허가 시 해당 분야 직원으로 하여금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

제42조(시설의 설치) ① 시설관리자는 사용자가 시설물 설치 시 공사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물 완공 시에는 시설물이 허가 및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대상 시설물의 경우 사용자에게 착공신고서 및 준공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② 시설관리자는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수면에 수상좌대(이동식 좌대 및 수상방갈로 등 도보로 접근할 수 없는 좌대 등을 말한다)의 설치를 허가 할 수 없다.

③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수면에 설치한 수상좌대는 당초 허가 받은 규모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관리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년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관련 행정기관의 지도·감독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원상회복 비용) ① 시설관리자는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미리 현금 예치, 지급보증서 또

는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당시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약속하는 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산출시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3개년간 물가지수 평균치 × 계약일수/365일)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③ 원상회복 비용은 현지여건, 시설물의 종류·투입예상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토목 등 기술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산출한다.

④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유효기간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에서 3월 이상을 더한 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유효기간 추가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원상회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⑤ 현금으로 예치한 원상회복에 대한 예치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반환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관리자의 주거래은행의 보통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예정일 20일 전에 예치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⑥ 삭제 <2020. 6. 5>

⑦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현금 예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기부채납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특성상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시설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이 설치 전보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이 향상되고 현대화된 시설(암거(暗渠: 속도랑), 콘크리트 개거(開渠: 겔도랑), 콘크리트 개거, 수로관, 포장도로 등의 대체시설물)로서, 매몰·파손 등의 우려가 없어 철거하지 않아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시설관리자가 판단한 시설

제44조(원상회복 및 피해복구) ① 시설관리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공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가 기부채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한 경과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종전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어류 등 동·식물포함)에 대하여 신규사용자가 이를 필요로 하여 전·후 사용자간 인계인수가 합의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자는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이나 시설물설치에 따른 수질,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민원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피해복구 등 모든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무단점용에 대한 처리) ① 시설관리담당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1.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원상회복

3. 필요 시 시설관리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전환

② 무단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127조 및 영 제94조·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무단점용료 산출 산식

< 사용료(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무단점용기간/365)×100분의 120 >

2. 무단점용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 연도별로 산출한 무단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1년 미만은 일할 계산

3.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매년 균등하게 분할 납부처리 가능

4. 무단점용료를 연체할 경우에는 영 제94조제6항·제7항에 따라 처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 부과기간은 무단점용을 시작한 날부터 원상복구한 날 또는 사용허가로 전환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무단점용료 부과기간은 원상복구한 날 또는 사용허가로 전

환한 날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무단점용자가 제1항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에는 법 제128조에 따라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강제 철거를 추진하여야 하며, 철거가 불가한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시설관리자는 무단점용에 대한 처리 상황은 별지 12호서식에 따라 반기 말 다음 월 10일까지 본사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목적외사용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목적외사용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목적외사용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승인 처분을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③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 지침 제12조(사용료의 산정 등)제5호나목, 제14조(사용료의 감면)제4호, 제24조(계약서 작성)제2항제4호에 따른 목적외사용료 감면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사용 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승인되거나
계약 체결된 건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승인되거나
계약 체결된 건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승인되거나
계약 체결된 건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승인되거나
계약 체결된 건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 지침」에 따라 허가되거나 계약 체결된 건은
이 지침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지침」에 따라 허가되거나 계약 체결된 건은 이 지침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4월 0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지침」에 따라 허가되거나 계약 체결된 건은 이 지침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6월 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허가되거나
계약 체결된 건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9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허가되거나
계약 체결된 건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시설관리자 소속 부서별 사용허가 업무분장

1. 사용허가업무 주관부서

- 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 나. 사용허가 신청사항 검토(불허가 사유 통보 포함) 및 불허가
- 다. 사용허가 신청, 허가 및 불허가 사항 통보
- 라. 계약체결 의뢰(지역본부장 승인조건 및 부대조건, 기타계약에 반영할 사항 첨부)
- 마. 사용허가 사후 관리
- 바. 허가사항 불이행시 계약 주관부서에 계약해지 의뢰
- 사. 감정평가 의뢰
- 아. 사용료 결정(공개경쟁 제외)
- 자. 공개경쟁 여부 결정 및 공개경쟁 의뢰
- 차. 대외 자료제출 및 보고
- 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시스템 자료입력, 기타사항

2. 계약업무 주관부서

- 가. 계약서 작성
- 나.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 및 체결내역 사용허가 주관부서 통보(사용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약일자 등)
- 다. 사용허가 주관부서와 사전협의 후 계약기한 종료 통지
- 라. 사용료 징수 및 납부독촉
- 마. 사용허가 주관부서의 계약해지 요청이 있거나 사용료 미납 등 계약사항 미 이행시 계약해지
- 바. 계약해지 사항 통보
- 사. 경쟁입찰 실시 및 공개경쟁에 의한 사용료 결정
- 아. 기타 계약관련 및 사용료징수·관리,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 절차도

1. 신규 사용 허가

- 가. 대단위사업 구역
 - 신청자 → 사업단 → 신청자와 계약
 - 신청자 → 사업단 → 사업단(입찰) → 신청자와 계약 (신재생에너지 허가 시)
- 나. 대단위사업외 구역
 - 신청자 → 지사 → 지역본부(1,000㎡ 초과 토지, 수면, 용수 허가 시) → 지사 → 신청자와 계약
 - 신청자 → 지사 → 지역본부(입찰 시행전 사전협의) → 지사(입찰) → 지역본부 → 신청자와 계약 (신재생에너지 허가 시)
- 다. 시설관리자 이외 부서의 경우
 - 신청부서(관할지사 의견조회) → 본사 주관부서에 신청 → 사용허가 소관 본부이사 → 신청부서의 장과 시설관리자에게 결과 통보
- 라. 가 ~ 다의 허가 및 계약 단계별 절차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용도의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계산의 적정성, 신재생에너지 자체사업 계획 여부, 설치 설비의 기술적 검토 사항 등 신재생에너지 해당 사업주관부서(본사, 지역본부, 사업단)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재사용 허가

- 가. 대단위사업 구역
 - 사용자신청 → 사업단 → 사용자와 계약
- 나. 대단위사업외 구역
 - 사용자신청 → 지사 → 사용자와 계약
- 다. 시설관리자 이외의 부서장이 재사용시에는 관할지사의 의견조회 후 본사 주관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되 본사 주관부서의 장은 시설관리자에게 결과 통보
- 라. 가 ~ 다의 재허가 및 재계약 단계별 절차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용도의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계산의 적정성, 신재생에너지 자체사업 계획 여부, 설치 설비의 기술적 검토 사항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사항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해당 사업주관부서(본사, 지역본부, 사업단)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단 제10조제7항에 따른 사용기간 갱신을 원인으로 재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내역 검토사항

1. 시설관리자 검토사항

-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용이성 및 지장 여부(준설, 개보수, 수질개선, 청소 등)
- 나. 농업용수공급 지장 여부(잉여수량분석, 단면크기, 용·배수 흐름 등)
- 다. 오·폐수 발생이나 유입등 수질오염 및 환경문제 야기 가능성 여부
- 라. 개거·암거·교량·취수시설, 관로매설 및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 등의 대체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 적합 및 안전성 여부
- 마. 위험시설(화약류, LPG저장소 등)·협오시설·환경오염시설 설치, 수질 및 토양 오염, 공장 및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발생 등에 의한 민원발생 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민원 해소 대책 및 실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
- 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본사 등으로부터 지시나 금지사항 저촉 여부
- 사. 이전 사용자와의 분쟁 소지 여부
- 아. 현지조사
- 자. 사용료 산출
- 차. 수리 및 구조 계산
- 카. 신청구비서류 적정성 및 누락 여부
- 타. 기타 사용허가와 관련되는 제반사항 검토 및 사용에 관한 시설 관리자 검토서 작성
- 파. 허가조건 및 부대조건에 관한 사항.

2. 지역본부장 검토사항

- 가. 시설관리자가 검토한 내용의 적정성 및 적법성 판단 및 재검토
- 나. 현지 확인(필요시)
- 다. 사용료 산출의 적정성 및 적법성
- 라. 기타 목적 외 사용과 관련되는 제반사항 검토
- 마. 허가조건 및 부대조건에 관한 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

구 분	사 용 목 적
1. 시설 토지 (홍수면 부지 포함)	영농, 산책로,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전기 및 통신시설 설치, 입간판 등 시설물설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속 건물 임대,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중 산책로나 수변데크의 설치, 꽃길 조성(단 공원,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등의 도시·군계획 시설은 제외) 등
2. 수면	낚시터, 낚시터시설 설치, 내수면어업, 유선업, 도선업, 수상스키, 수상골프연습장, 조정경기장, 조종면허시험장, 산책로, 수생식물식재, 습지식물식재, 수변생태공원조성,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등
3. 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발전용수, 환경용수, 관광용수 등

공공목적 사용 등 사용료 감면기준

구 분	감면기준 (감면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 철도 등의 건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1/2 감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청사 등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1/2 감면
3. 산불 등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 재난 대응, 인명 구호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긴급한 일시 사용은 전액 감면 (그 외에는 1/2 감면)
4. 군사작전·훈련 등 국가안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긴급한 일시 사용은 전액 감면 (그 외에는 1/2 감면)
5.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	1/2 감면
6.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산책로나 수변 데크의 설치, 꽃길 조성이나 수생식물 식재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공원,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등의 도시·군계획 시설은 제외한다.)	1/2 감면
7. 공공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한 표지판, 안전 난간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2 감면
8. 삭제 <2020. 6. 5>	

※ **별표 5. 5번**의 비영리사업은 영리사업이 아닌 경우를 말하며, 영리사업이란 사업의 규모, 횟수, 양태 등을 고려한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인정될 때이다.

- 1)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갖는 경우
- 2) 계속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재사용허가)신청서				
사 용 자	법인 또는 기관명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이동전화번호	
사 용 시 설	시 설 명	위 치		사용면적(m ²) (사용수량,ton)
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				
사 용 기 간			사용개시에정일	
농어촌정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재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덧붙임 : 사업계획서(설계도면, 구비서류 포함) 1부. 끝. 귀하				

-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점용하거나, 손괴 또는 시설관리자의 허락없이 수문조작, 용수의 인수등 불법행위시 농어촌정비법 제130조에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27조에 따라 무단점용료가 징수됩니다.

사 업 계 획 서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시설명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 t)		소유자
	시·군	구·읍·면	동·리			지적 (임여수량)	사용 (사용수량)	
계								

3. 목적 외 사용의 목적·방법 및 기간

가. 사용목적 :

나. 사용방법 :

다. 사용기간 :

4. 신청지의 지역여건 및 기능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사항 :

나. 신청지의 주변현황 :

다. 주변개발현황 :

라. 농업생산기반시설 현재의 기능 :

5. 대체시설 설치계획(설계도면 및 부속서류 별첨)

공 종	규 격	수 량	비 고

6.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7. 수질환경보호(환경정화) 계획 (수면사용에 한함) < 신 설 >

구 분	세부 추진계획	시행시기	비 고
1. 임대시설주변 환경정화 계획	○ ○		
2. 수질오염 감시활동 계획	○ ○		
3. 어류먹이 투입량 저감계획	○ ○		
4. 수상좌대 분노 등 처리계획	○ ○		
5. 사후관리 및 페어망 수거계획	○ ○		
6. 유류 유출방지 계획	○ ○		
7. 기타 필요한 사항	○ ○		

※ 수면사용 종류(유·도선업, 수상레저업, 어업, 낚시업 등)에 따라 내용 일부 변경하여 사용 가능

8. 기타사항

덧붙임

- 가. 현황측량도 및 구적도. 단 지적도등에 사용단면과 위치 등을 표시하여 면적을 산출하거나 현장실측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나. 대체시설의 설계도면(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수리계산서, 구조계산서. 단 한국농어촌공사 보유 표준설계도(그룹웨어>업무시스템>기술정보>표준도관리)및 KS인증 기성제품 제작도면 및 국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표준설계도면 대체 활용 가능하되 대체활용시 추가적인 설계도서가 필요할 경우 추가 제출
- 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통하여 출력이 될 경우 출력 구비 가능)
- ※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선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신청서, 별지 제2호의 사업계획서, 지적공부만을 제출받고 이후 경쟁입찰로 사용자가 선정된 후 설계도면 등 세부사항 제출

[별지 제3호 서식]<제8조제4항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재허가)신청서				
사 용 자	법인 또는 기관명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이동전화번호	
사 용 시 설	시 설 명	위 치		사용면적(m ²) (사용수량,ton)
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				
사 용 기 간			사용개시예정일	
경비부과예정액				
농어촌정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덧붙임 : 1. 사업계획서(설계도면, 구비서류 포함) 1부 2. 시설관리자 검토서 1부. 끝.				
귀하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점용하거나, 손괴 또는 시설관리자의 허락없이 수문조작, 용수의 인
수등 불법행위시 농어촌정비법 제130조에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27조에 따라 무단점용료가 징수됩니다.

시설관리자 검토서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시설명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t)		소유자
	시·군	구·읍·면	동·리			지적 (잉여수량)	사용 (사용수량)	
계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방법 및 기간

시설명	기 능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기간

4. 대체시설 설치계획

기 존 시 설		대 체 시 설		
구 조	규 격	구 조	규 격	수 량

5. 사용료 부과예정액 및 산출근거

사용자	지 번	산출근거	금 액(원/년)	비 고
계				

6.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7. 시설관리자 검토의견

허가신청내역 검토사항	검토의견
1. 신청구비서류 적격 및 누락 여부 ----- ----- ----- 2. 검토사항 가. 오·폐수 발생이나 유입 등 수질오염 및 환경문제 야기 가능성 여부 ----- 나. 위험시설, 혐오시설, 환경오염시설 설치 등에 의한 민원발생 예상여부 ----- 다. 이전 사용자와의 분쟁소지 여부 ----- 라. 사용료산출 ----- 마. 현지조사 ----- -----	

허가 신청내역 검토사항	검토의견
바. Con'c개거 수리계산, 구조계산, 유지관리의 용이성(준설, 청소 등) ----- 사. Box암거 수리계산, 구조계산, 유지관리의 용이성(준설을 위한 맨홀설치, 청소편이를 위한 스크린설치 등) ----- 아. 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포장 ----- 자. 관로매설의 원칙, 단면검토 ----- 차. 기타 목적 외 사용과 관련되는 제반사항 검토 ----- 카. 당해 시설의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등	

년 월 일

(인)

귀하

[별지 제5호 서식]<제27조제1항 관련>

지사 소요경비 산출내역(전년도 결산서내역참고)		
구 분	세 부 내 역	비고
☐ 지사소요경비	① 직접사업비 + ② 간접사업비	
① 직접사업비	직접비 + 인건비 + 경비	
② 간접사업비	공통비 + 관리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사용료 지급이행 각서

귀 공사가 관리하는 다음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영농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은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사항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특히 사용허가 사용료는 아래에 정한 기한까지 틀림없이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본 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임대차 계약 대상

사용목적	소재지	지번	지목	임대차면적	재배작물

2. 사용허가 사용료 : 금 원

3. 사용허가 사용료 납부기한 : 매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임차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사업단장) 귀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서

제 - 호

1. 시설 관리자 : 한국농어촌공사 ○○○○장

2. 목적 외 사용자 :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라. 허가사항

시설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사용면적 사 용 량 (㎡/㎡)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시군	읍면	동리						
계								

마. 허가조건 :

상기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손괴하는 등 불법 행위 시 농어촌정비법 제13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 가 조 건

- 1.
- 2.
- 3.
- 4.
- 5.
- 6.
- 7.

[별지 제6의2호 서식] <제11조제4항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불허가 통지서

제 201 - 00 호

1. 시설 관리자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사업단장)

2. 사용허가 신청자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라. 신청사항

시설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신청사용량 (㎡/㎡)	신청목적	사용기간
시군	읍면	동리						
계								

마. 불허가 사유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사업단장)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손괴하는 등 불법행위 시 농어촌정비법 제13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신청서				
사 용 자	법인 또는 기관명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이동전화번호	
사 용 시 설	시 설 명	위 치		사용면적(m ²) (사용수량,ton)
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				
사 용 기 간			사용개시예정일	
경비부과예정액				
감면 신청 사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징수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덧붙임 : 1. 관련 증빙자료(필요시) 1부 귀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납부고지서			
1. 납부자(사용자)			
회사명(성명)			
주 소			
2. 임대목적물(용수사용내역)			
소 재 지			
임대면적(용수사용량)		m ² (m ²)	사용용도
임대료 산정방법			
3. 사용기간			
총계약기간			
금회납부 계약기간			
4. 납부금액			
납부금액 계			
	사 용 료		
	부가가치세		
	감정평가 수수료		
	비 고		
5. 납부기한 : 0000년 00월 00일			
6. 납부계좌 : 농협 000-000-000000(예금주)			
0000년 농업생산기반시설 ○○ 사용허가 사용료를 위와 같이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 (인)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른 사용료의 연12~14%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 및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 ○○지사 000)000-00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납부특약장(제○차)

1. 납부자(사용자)

회사명(성명)	
주 소	

2. 임차목적물(용수사용내역)

소 재 지			
임대면적(용수사용량)	m'(m')	사용용도	
임대료 산정방법			

3. 사용기간

총계약기간	
금회납부 계약기간	

4. 납부금액

납부금액 계		
	사 용 료	
	부가가치세	
	감정평가 수수료	
	연 체 료	(사용료의 %×연체일수/365)
	비 고	

5. 납부기한 : 0000년 00월 00일

6. 납부계좌 : 농협 000-000-000000(예금주)

0000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용료를 기 통지하여 드린 기한내에 납부치 아니하여 제0차 독촉하니, 새로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료를 계속하여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의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 (인)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른 사용료의 연2~14%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 (3회차 독촉장에는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됨을 명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 및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 ○○지사 000)000-00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년 용수 목적 외 사용 검침 기록부

(단위 : m')

시설명	사용자	검침일	전월검침 (A)	당월검침 (B)	사용량 (B-A)	누계 사용량	검침 및 확인		결 재		비고
							공사	사용자	담당	부장	
							(인)	(인)			

※ 사용자 및 시설별로 1년 단위로 작성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 처리실적 보고서

지역 본부	지사명	자산 구분	자산 번호 (ERP)	표준 코드 (RIMS)	토지소재지				지적		지목	
					도	시군	읍면	동리	본번	부번	공부	현황

지적면 적	사용면 적	무단 점용 현황			무단점용료징수현황			비고
		사용현황	무단 점용자	주 소	무단 점용료	징수 일자	징수 계획일	

시설토지 사용 임대차 계약서(표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토지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임대차재산의 표시 (면적 : m ²)					
사용목적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임대차면적	비 고

제1조(사용목적) “갑”과 “을”은 위 표기 시설토지를 상기의 사용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등) ① 임대차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 ○○월 ○○일(년 월)까지로 한다.

② “을”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임대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임대차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연장신청이 있을 임대차 물건의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 등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④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능이 폐지되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은 이 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한 시설토지가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잔여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을”이 계속하여 위 표기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일반임대차로 전환하여 신규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시설) “을”이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임대부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시설구분	규 모	수 량	비 고

제4조(행위금지) ①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시설부지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2. 규모의 변경사용
3. 임차 시설부지 및 사용권의 전대행위 또는 양도
4. 제3조에 정한 시설의 “갑”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
5. 임차 시설부지의 형질변경
6. 새로운 권리의 설정 및 이전
7. 시설관리 및 용수공급 등 본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을”은 “갑”으로부터 임차한 부지를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할 경우, 향후 계약자 이외의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 사용료 납부, 시설투자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타인의 사용(통행)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용료 부과 및 납부 등)

<다년계약 사용료 일시납부 계약의 경우 적용>

- ① 임대차기간(○년○월)동안의 총 사용료는 금○○○○원(₩000,000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 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납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대상 사용료에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일수에 다음 각 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더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10%

<다년계약 사용료 연차별 선납 계약의 경우 적용>

- ① 1차년도의 임차사용료는 금○○○원(₩000,000원)으로 한다.
- 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납으로 “갑”에

게 납부한다.

③ 2차년도 부터의 사용료는 매년마다_____방법에 따른다.

④ “을”은 제3항의 방법으로 산출된 2차년도 이후의 임차료를 매년 1회씩 “갑”이 정하여 통보한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갑”은 2차년도 부터의 임차료를 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납부일로 하여 납부기한 30~15일 이전까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대상 사용료에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일수에 다음 각 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더하여 “갑”에게 납부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10%

<사용료 분할납부 계약의 경우 적용>

① 1차년도 임차사용료는 금○○○원(₩000,000원)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회 분할하여 다음과 같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납부금액(원)	납부기간	비 고
1회차		계약체결일	
2회차		년 월 일	
3회차		년 월 일	
4회차		년 월 일	

③ 2차년도 부터의 사용료는 매년마다_____방법에 따른다.

④ “을”은 제3항의 방법으로 산출된 2차년도 부터의 임차료를 매년 1회씩 “갑”이 정하여 통보한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차년도 이후에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1회차는 매 계약일까지, 2회차 부터는 제2항에서 정한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매 계약일 2개월 전에 “갑”에게 분할납부하겠다는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이 2차년도 이후에 임차료를 일시납으로 선납할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납부일로 하여 납부기한 30~15일 이전까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대

상 사용료에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일수에 다음 각 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더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

제6조(임차료 감면 등) ① “갑”이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재해예방,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당시 “을”이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시설투자비 보다 적은 수입을 얻은 것이 증명될 때에는 “갑”은 “을”의 신청에 따라 임차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가뭄,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을”이 사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을”은 “갑”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임차료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임차료는 일할 계산하여 감면한다. 다만, “을”은 “갑”에게 그때까지의 적자나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사용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설물의 설치) ① “을”은 제3조에 정한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이전에 그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를 거쳐 설치하고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을”이 제3조에 명시한 시설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갑”은 “을”이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된다면 추가설치를 거부할 수 있다.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 등) ① “을”은 “갑”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선량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파손, 훼손,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의 요청에 따라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책임 등) ① “을”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자리세 징수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② “을”은 쓰레기 오물 등 불법 투기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정화를 실시하여 주변 환경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의 부지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환경정화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동 계획서를 작성, “갑”의 검토를 받은 후 검토된 계획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용기간 중 발생한 손실(임목훼손, 시설파괴, 손실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을”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을”이 설치한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강구·실행하여야 하고 “을”이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원 및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을”은 사용목적 및 시설물설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에서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① “갑”은 본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갑”과 “을”이 협의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3. 사용자 선정 및 계약행위 일체와 관련 금품수수 또는 향응제공 등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을”이 본 계약서상의 계약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 되었을 경우

5. “을”이 본 계약과 관련된 실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을”이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8. “을”이 건축물의 건축,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하여 진입로, 오·폐수관로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그 건축물, 그 밖에 시설물 등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목적이 상실되는 경우

9.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1년 이내에 발전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② “을”은 본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와 “갑”과 “을”이 협의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2. “을”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멸실로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3. “을”이 사망, 피한정후견, 피성년후견, 질병, 징집, 취학, 복역 등으로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위약금 등) ① “을”은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로 계약해지되는 경우와 “을”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연간 목적 외 사용료의 10%(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1년 이내에는 10%, 2년 이내에는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8호의 경우 “갑”의 동의 얻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을”이 설치한 건축물, 또는 그 밖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인수한 제3자가 동의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철거·훼손 등) ① “을”은 홍수 등 긴박한 재해발생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재해예방을 위하여 “을”이 설치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을”의 안전조치 이행이 없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이 설치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갑”이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을”은 “갑”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시설토지의 공동 사용) ① “을”은 시설토지를 공장이나 주택 등의 진입로 용도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을”이 사용료 납부, 대체시설 설치 및 비용의 투자 등을 이유로 “갑”이나 타인의 통행 등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임대차기간 동안 “을”이 사용 중인 시설 토지를 제3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동으로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채납(대체시설이나 기타 물건의 소유권을 시설관리자

에게 무상으로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대체시설의 설치비는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연고권 주장금지) “을”은 제10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결된 경우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① “을”이 목적 외 사용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 “을”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금○○○원(₩ 원)을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원상회복예치금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예치한 원상회복예치금을 계약의 종료·해지 후 “을”이 원상회복을 하는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갑”은 원상회복예치금을 사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갑”이 시설물을 철거 등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원상회복예치금 중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을”에게 반환하고 정산액이 부족할 때에는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산 부족액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임대차물건의 반환 등) ① “을”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되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을 기부채납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갑”과 “을”간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17조(통지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3.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 발생된 경우
5. 그 밖에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항

② “을”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을”이 부담으로 한다.

제18조(통지의 효력) ① “갑”은 “을”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그 밖에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

으로 본다.

② “을”이 제16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 또는 그 밖에 서류가 “을”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 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부대조건) “불입과 같음”(부대조건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제20조(협 의) 본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갑”의 농업 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을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의 합의) 본 계약 이행에 있어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및 부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법원으로 한다.

제22조(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안전관련법을 준수하여 점검,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조치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손해배상 등 제반사항은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가 민법 등 기타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손해 배상으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본 계약에 관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계약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도 ○○시·군 ○○읍·면·동 ○○리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단(지사)장 ①

“을” ○○도 ○○시·군 ○○읍·면·동 ○○리
주민등록번호
○ ○ ○ ①

20 년 월 일

특 약 사 항

계약서 본문에 없는 부대조건을 기재

(예시)

1. 수입금액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총 수입금(총소득)은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소득총액을 말한다.”
2. 아파트 건축 사업시행자인 “을”은 시설 토지 진입로 또는 관로매설 등의 사용목적으로 시설토지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면 위 사용토지에 대하여 시설관리자와 입주자 등 대표가 목적 외 사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세대주택 건축 사업시행자인 “을”은 시설 토지 진입로 또는 관로 매설 등의 사용목적으로 시설토지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다세대주택 분양이 완료되면 위 사용토지에 대하여 시설관리자와 각각의 가구주가 목적 외 사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농사용 임대차 계약서(표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임대차재산의 표시 (면적 : m²)

사용목적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임대차면적	재배작물

제1조(사용목적) “갑”과 “을”은 위 표기 시설토지를 상기의 사용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등) ① 임대차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 ○○월 ○○일(년 월)까지로 한다.

② “을”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임대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임대차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연장신청이 있을 임대차 물건의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조건 등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④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능이 폐지되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은 이 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한 시설토지가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잔여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을”이 계속하여 위 표기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일반임대차로 전환하여 신규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3조(행위금지)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시설토지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2. 규모의 변경사용 및 공작물의 설치
3. 임차 시설부지 및 사용권의 전대행위 또는 양도

4. 임차 시설부지의 형질변경
5. 새로운 권리의 설정 및 이전
6. 시설관리 및 용수공급 등 본래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7. 시설의 설치 또는 다년생 농작물의 재배. <단서조항 삭제>

제4조(사용료 부과 및 납부등)

<사용료 선납 계약의 경우 적용>

- ① 1차년도 임차사용료는 금○○○원(₩ 원)으로 한다.
- 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납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③ 2차년도 부터의 사용료는 매년마다 _____ 방법으로 따른다.
- ④ “을”은 제3항의 방법으로 산출된 2차년도 이후의 임차료를 매년 1회씩 “갑”이 정하여 통보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⑤ “갑”은 2차년도 부터의 임차료를 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납부일로 하여 납부기한 30~15일 이전까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을”은 “갑”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대상 사용료에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일수에 다음 각 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더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10%

⑦ “을”이 재배작물을 변경할 경우에는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실제 재배작물로 산정한다.

<사용료 후납 계약의 경우 적용>

① 임차사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기본산식을 「생산량×시가의 100분의 10」으로 하여 “갑”이 아래의 기준에 의거 결정 통지한다.

1. 생산량 산정기준 : _____

2. 시가 산정 기준 : _____

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갑”이 정한 기한까지 일시에 납부한다.

③ “을”은 “갑”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대

상 사용료에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일수에 다음 각 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더하여 “갑”에게 납부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10%

④ “을”이 시설토지를 임차한 후 경작을 하지 아니하여 제1항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갑”이 결정 부과하며, 전년도 사용료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유사한 토지의 작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을”이 재배작물을 변경할 경우에는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실제 재배작물로 산정한다.

<사용료 분할납부 계약의 경우 적용>

① 1차년도 임차사용료는 금○○○원(₩000,000원)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회 분할하여 다음과 같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납부금액(원)	납부기간	비 고
1회차		계약체결일	
2회차		년 월 일	
3회차		년 월 일	
4회차		년 월 일	

③ 2차년도 부터의 사용료는 매년마다 _____ 방법에 따른다.

④ “을”은 제3항의 방법으로 산출된 2차년도 부터의 임차료를 매년 1회씩 “갑”이 정하여 통보한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차년도 이후에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1회차는 매 계약일까지, 2회차 부터는 제2항에서 정한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매 계약일 2개월 전에 “갑”에게 분할납부하겠다는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이 2차년도 이후에 임차료를 일시납으로 선납할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납부일로 하여 납부기한 30~15일 이전까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대상 사용료에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일수에 다음 각 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더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10%

제5조(임차료 감면 등) ① “갑”이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재해예방,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당시 “을”이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시설투자비 보다 적은 수입을 얻은 것이 증명될 때에는 “갑”은 “을”의 신청에 의하여 임차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가뭄,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을”이 사용목적 달성이 못하게 되었을 때 “을”은 “갑”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나 임차료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갑”에게 그때까지의 적자나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은 “갑”이 내부지침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다만, 계약 후 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신청은 “을”이 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갑”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 등) ① “을”은 “갑”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시설토지를 선량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파손, 훼손,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의 요청에 따라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책임 등) ① “을”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자리세 징수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② “을”은 쓰레기 오물 등 불법 투기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저수지 수질 보호 및 환경정화를 실시하여 주변 환경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용기간 중 발생한 손실(임목훼손, 시설파괴, 손실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 ① “갑”은 본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갑”과 “을”이 협의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한 경우
2. 제3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3. 사용자 선정 및 계약행위 일체와 관련 금품수수 또는 향응제공 등 정상적인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을”이 본 계약서상의 계약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고유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 되었을 경우
5. “을”이 본 계약과 관련된 실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을”이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8.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1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조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② “을”은 본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와 “갑”과 “을”이 협의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임차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2. “을”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멸실로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3. “을”이 사망, 피한정후견, 피성년후견, 질병, 징집, 취학, 복역 등으로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제9조(위약금 등) “을”은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계약해지 되는 경우와 “을”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연간 목적 외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동의를 얻어 계약기간의 변경없이 계약상대자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철거·훼손 등) ① “을”은 홍수등 긴박한 재해발생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재해예방을 위하여 “을”이 재배한 작물 및 설치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을”의 안전조치 이행이 없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에는 “을”이 재배한 작물 및 설치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을”은 “갑”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연고권 주장금지) “을”은 제8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결된 경우에는 연고권을 주장 할 수 없다.

제12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① “을”이 목적 외 사용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 할 경우, “을”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금○○○원(₩ 원)을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원상회복비용 예치금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예치한 원상회복비용 예치금을 계약의 종료·해지 후 “을”이 원상회복을 하는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갑”은 원상회복비용 예치금을 사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갑”이 시설물을 철거 등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원상회복비용 예치금 중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을”에게 반환하고 정산액이 부족할 때에는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산 부족액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차물건의 반환 등) ① “을”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되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을 기부채납 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갑”과 “을”간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통지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3.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 발생된 경우

5. 그 밖에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항

② “을”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을”이 부담으로 한다.

제15조(통지의 효력) ① “갑”은 “을”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그 밖에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이 제16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 또는 그 밖에 서류가 “을”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부대조건) “불임과 같음”(부대조건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제17조(협 의) 본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갑”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을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관할법원의 합의) 본 계약 이행에 있어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및 부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법원으로 한다.

제19조(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안전관련법을 준수하여 점검,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조치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손해배상 등 제반사항은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가 민법 등 기타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손해 배상으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본 계약에 관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계약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특 약 사 항

계약서 본문에 없는 부대조건을 기재

“갑” ○○도 ○○시· 군 ○○읍·면·동 ○○리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단(지사)장 ㉠

“을” ○○도 ○○시· 군 ○○읍·면·동 ○○리
주민등록번호

○ ○ ○ ㉡

건물사용 임대차 계약서(표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건물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임대차재산의 표시		(면적 : m ²)		
사용목적	물건	소재지	임대차면적	비고
	건물명 : 층·호수 : ○층, ○호			

제1조(사용목적) “갑”과 “을”은 위 표기 건물을 상기의 사용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등) ① 임대차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 ○○월 ○○일(년 월)까지로 한다.

② “을”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임대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임대차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연장신청이 있을 임대차 물건의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 등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④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능이 폐지되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은 이 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한 건물이 국·공유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잔여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을”이 계속하여 위 표기의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일반임대차로 전환하여 신규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시설) “을”이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시설구분	규모	수량	비고

제4조(행위금지)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건물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2. 규모의 변경사용
3. 임차 건물 및 사용권의 전대행위 또는 양도
4. 제3조에 정한 시설의 “갑”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
5. 임대차 건물의 증·개축 등 변경 행위
6. 새로운 권리의 설정 및 이전
7. 임대차 건물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는 행위
8. 임대차 건물을 이용한 불법 상행위
9.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용수공급 등 본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사용료 부과 및 납부 등)

<다년계약 사용료 일시납부 계약의 경우 적용>

- ① 임대차기간(○년○월)동안의 총 사용료는 금○○○○○원(₩000,000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 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납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대상 사용료에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일수에 다음 각 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더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10%

<다년계약 사용료 연차별 선납 계약의 경우 적용>

- ① 1차년도의 임차사용료는 금○○○원(₩000,000원)으로 한다.
- 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납으로 “갑”에

게 납부한다.

③ 2차년도 부터의 사용료는 매년마다 _____ 방법에 따른다.

④ “을”은 제3항의 방법으로 산출된 2차년도 이후의 임차료를 매년 1회씩 “갑”이 정하여 통보한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갑”은 2차년도 부터의 임차료를 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납부일로 하여 납부기한 30~15일 이전까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대상 사용료에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일수에 다음 각 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더하여 “갑”에게 납부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10%

<사용료 분할납부 계약의 경우 적용>

① 1차년도 임차사용료는 금○○○원(₩000,000원)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회 분할하여 다음과 같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납부금액(원)	납부기간	비 고
1회차		계약체결일	
2회차		년 월 일	
3회차		년 월 일	
4회차		년 월 일	

③ 2차년도 부터의 사용료는 매년마다 _____ 방법에 따른다.

④ “을”은 제3항의 방법으로 산출된 2차년도 부터의 임차료를 매년 1회씩 “갑”이 정하여 통보한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차년도 이후에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1회차는 매 계약일까지, 2회차 부터는 제2항에서 정한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매 계약일 2개월 전에 “갑”에게 분할납부하겠다는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이 2차년도 이후에 임차료를 일시납으로 선납할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납부일로 하여 납부기한 30~15일 이전까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대상 사용료에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일수에 다음

각 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더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10%

제6조(비용부담) “을”은 임대차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 관련비용을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의 설치) ① “을”이 제3조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갑”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을”은 제3조에 정한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이전에 그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를 거쳐 설치하고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③ “을”이 제3조에 명시한 시설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갑”은 “을”이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된다면 추가 설치를 거부할 수 있다.

④ “갑”은 제3조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을”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을”은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전체 건물 및 사용자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을”은 화재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 등) ① “을”은 “갑”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선량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파손, 훼손,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의 요청에 따라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책임 등) ① “을”은 임대차 건물을 이용한 불법적인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쓰레기 오물 등 불법 투기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변환경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용기간 중 임대 건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시설파괴, 멸실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을”이 설치한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강구·실행하여야 하고 “을”이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원 및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을”은 사용목적 및 시설물설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에서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① “갑”은 본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갑”과 “을”이 협의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3. 사용자 선정 및 계약행위 일체와 관련 금품수수 또는 향응제공 등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을”이 본 계약서상의 계약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
5. “을”이 본 계약과 관련된 실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을”이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8.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제1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1년 이내에 발전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② “을”은 본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와 “갑”과 “을”이 협의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2. “을”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멸실로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3. “을”이 사망, 피한정후견, 피성년후견, 질병, 징집, 취학, 복역 등으로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위약금 등) “을”은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계약해지되는 경우와 “을”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연간 목적 외 사용료의

10%(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1년 이내에는 10%, 2년 이내에는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철거·훼손 등) ① “을”은 화재 등 긴박한 재해발생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재해예방을 위하여 “을”이 설치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을”의 안전조치 이행이 없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이 설치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갑”이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을”은 “갑”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연고권 주장금지) “을”은 제8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결된 경우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① “을”이 목적 외 사용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 “을”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금○○○원(₩)을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원상회복예치금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예치한 원상회복예치금을 계약의 종료·해지 후 “을”이 원상회복을 하는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갑”은 원상회복예치금을 사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갑”이 시설물을 철거 등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원상회복예치금 중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을”에게 반환하고 정산액이 부족할 때에는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산 부족액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임대차물건의 반환 등) ① “을”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되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을 기부채납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갑”과 “을”간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16조(통지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 86 -

수면의 유·도선업/수상레저업 임대차 계약서(표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수면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 제1조(사용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임차한 수면을 ○○○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다.
- 제2조(사용범위) “을”이 사용할 수 있는 수면의 장소 및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을”은 사용구역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표 등을 설치 표시하여야 한다.

저수지(담)명	소재지	만수면적	사용면적	사용범위(위치)	사용제한구역
		m ²	m ²	붙임도면참조	

- 제3조(임대차기간) ①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년 월)까지로 한다.
- ②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능이 폐지되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은 이 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한 시설이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른 잔여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을”이 계속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일반임대차로 전환하여 신규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기구 및 설치시설) ① “을”이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및 설치시설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종 류	규모	수량	비 고
승선물	모터보트			
	요 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 쿨 터			
	노 보 트			
시설물	수상스키			
	·			
	·			
	관 리 사			
	화 장 실			
	선 착 장			
·	부교(가교)			
	·			
·	·			

② “을”이 제1항 이외의 기구 및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는 “갑”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영업면허취득) “을”은 수면의 목적 외 사용에 필요한 면허,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허 또는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금지) “을”은 임차 수면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에게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단속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이외의 행위
2. 제4조에 정한 기구, 시설 외 “갑”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변경
3. 임차 시설(수면) 및 사용권의 전대행위 또는 양도
4. 새로운 권리의 설정 및 이전
5.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및 용수공급 등 본래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제당석축 및 여수토와 “갑”이 제한하는 구역에서의 주차 및 낚시 행위
7. 선착장, 승선대기실 및 선박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행위.

제7조(사용료 부과 및 납부등)

<사용료 일시불 계약의 경우 적용>

- ① 1차년도의 임차사용료는 금○○○원(₩ 원)으로 한다.
- ② “을”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시설부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차료를 일시납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③ 2차년도 부터의 사용료는 매년 _____방법에 따른다.(공개입찰에 의한 계약시는 “낙찰금액으로 한다”로 교체 사용)

④ “갑”은 2차년도 부터의 임차료를 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납부일로 하여 납부기한 30~15일 이전까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대상 사용료에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일수에 다음 각 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더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10%

<사용료 분할납부 계약의 경우 적용>

① 1차년도 임차사용료는 금○○○원(₩000,000원)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회 분할하여 다음과 같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납부금액(원)	납부기간	비 고
1회차		계약체결일	
2회차		년 월 일	
3회차		년 월 일	
4회차		년 월 일	

③ 2차년도 부터의 사용료는 매년마다_____방법에 따른다.

④ “을”은 제3항의 방법으로 산출된 2차년도 부터의 임차료를 매년 1회씩 “갑”이 정하여 통보한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차년도 이후에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1회차는 매 계약일까지, 2회차 부터는 제2항에서 정한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매 계약일 2개월 전에 “갑”에게 분할납부하겠다는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이 2차년도 이후에 임차료를 일시납으로 선납할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납부일로 하여 납부기한 30~15일 이전까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대상 사용료에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일수에 다음 각 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더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10%

제8조(임대보증금) ① “을”이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증서를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선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라 한다)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갑”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그 밖에 담보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임차료 감면 등) ① “갑”이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재해예방,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 당시 “을”이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시설투자비 보다는 적은 수입을 얻은 것이 증명될 때에는 “갑”은 “을”의 신청에 따라 임차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가뭄,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을”이 사용목적에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을”은 “갑”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임차료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임차료는 일할 계산하여 감면한다. 다만, “을”은 “갑”에게 그때까지의 적자나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사용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설물의 설치 등) ① “을”은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시설물 설계도서를 사전 “갑”과 협의를 거쳐 실시하고 주변 환경을 감안하여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을”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부지에 설치한 “을”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조치 및 수질·환경보호 대책을 강구·실행하여야 한다.

③ “갑”의 허가를 받아 “을”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갑”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시설물 설치가 허가 및 계약내용과 일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 등) ① “을”은 “갑”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시설

부지를 선량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파손, 훼손, 형질 변경 또는 심각한 수질오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선박 등 승선물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제당 석축 및 저수지·댐 연안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의 요청에 따라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을”이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갑”의 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시설부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갑”은 “을”을 대리하여 “을”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을”이 설치한 시설물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에 관한 민원 및 손해배상등 제반문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안전운행 준수 등) ① “을”은 선박 등 승선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행질서유지 및 위험방지에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도선업에 따른 유선운행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 까지 하며 태풍 등 기상 악화인 때에는 유선운행을 금지한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야간운행에 필요한 조망시설 등 안전운행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영업시간 등 허가 범위에서 “갑”과 협의하여 일몰 후 ()시까지 유선운행을 할 수 있다.
2. 만취, 알콜중독자 및 정신이상자는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유선상에서 음주, 가무, 도박등 질서 문란행위를 금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갑”이 정한 금지수역에서는 선박 등 승선물의 운행을 금지한다.

② “을”은 선박 및 시설물이 노후·파손되지 않도록 항상 시설정비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등) ① “을”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자리세 징수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② “을”은 쓰레기 오물등 불법 투기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저수지 수질보호 및 환경정화를 실시하여 주변환경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용 기간 중 발생한 손실(심각한 수질오염, 임목 훼손, 시설파괴손실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갑”의 승인으로 시설을 투자하거나 비용을 지출할 경우 “을”은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물설치 완료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은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수입 및 지출금액 증빙자료를 작성 비치하고 “갑”의 요청시 관련서류를

제시 하여야 한다.

⑤ “을”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등 “을”의 사용과 관련된 개별법 및 제4조에 정한 사용기구와 시설의 관리·이용·운행과 제12조의 안전운행 미 준수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기되는 민원 및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 보전을 위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농업용수사용 등) “갑”은 한해대책 및 시설개보수사업을 위하여 본 저수지·댐의 용수를 농업용수공급을 위하여 전량 방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호 및 수질오염방지 등) ① “을”은 사업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수질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수질검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환경정화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철저히 준수를 하여야 하며, “갑”은 동 계획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 임대 불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임대시설 주변 환경정화 계획
2. 수질오염감시 활동계획
3. 유류 유출 방지계획 등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시료의 채취는 반드시 “갑”과 “을” 및 지역주민(수질관리협의회) 입회하에 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취된 측정시료에 대한 수질검사의 결과는 “갑”이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분기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자체 수질관리계획에 따라 동 수면(저수지, 댐 등)에 대하여 수질검사(수질측정망조사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 수질검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은 총유기탄소량(TOC),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량(SS) 등을 실시한다. 다만, 목적 외 사용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사용자에게 추가 할 수 있다.

1. 중금속 오염 : 납(Pb), 카드뮴(Cd), 비소(As), 구리(Cu), 수은(Hg), 아연(Zn)
2. 유류오염 : BTEX (Benzene,Toluene, Ethylbenzene, Xylene), TPH(Total Petrollum Hydrocarbon)

⑤ “을”이 제3항 단서에 따라 “갑”이 실시한 수질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과 “갑” 및 지역주민(수질관리협의회)이 공동으로 물 시료를 채수하여 제

3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제3항 본문, 제4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년평균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IV등급을 2년 연속 초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만료 전 사용자에게 예고하고 계약만료 후 허용수질기준을 달성할 때 까지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계약해지) ① “갑”은 본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갑”과 “을”이 협의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기간에 면허 또는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4. 사용자 선정 및 계약행위 일체와 관련 금품수수 또는 향응제공 등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을”이 본 계약서상의 계약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고유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
6. “을”이 본 계약과 관련된 실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을”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8.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9. 제13조 제4항의 수입금액 증빙자료를 “갑”이 요청하였음에도 “을”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축소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1년 이내에 발전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② “을”은 본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와 “갑”과 “을”이 협의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임차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2. “을”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멸실로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3. “을”이 사망, 피한정후견, 피성년후견, 질병, 징집, 취학, 복역 등으로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제17조(위약금)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 연간 목적 외 사용료의 10%(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1년 이내에는 10%, 2년 이내에는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 제1항 제2호 ~ 제10호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을”이 중도계약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철거·훼손 등) ① “을”은 홍수 등 긴박한 재해 발생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재해예방을 위하여 “을”이 설치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을”의 안전조치 이행이 없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이 설치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갑”이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을”은 “갑”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연고권주장금지) “을”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고권을 주장 할 수 없다.

제20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① “을”이 목적 외 사용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 할 경우, “을”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금○○○원(₩ 원)을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원상회복예치금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예치한 원상회복예치금을 계약의 종료·해지 후 “을”이 원상회복을 하는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갑”은 원상회복예치금을 사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갑”이 시설물을 철거 등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원상회복예치금 중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을”에게 반환하고 정산액이 부족

제21조(임대차물건의 반환 등) ① “을”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되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을 기부채납 할 수 있다.

③ 제2조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갑”과 “을”간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주소,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3.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항

제23조(통지의 효력) ① “갑”은 “을”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그 밖에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본다.

제25조(협 의) 본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갑”의 농업 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을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안전관련법을 준수하여 점검,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조치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손해배상 등 제반사항은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을”은 본 계약에 관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계약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특 약 사 항

○ ○ ○ (인)

수면의 어업/낙시업 임대차 계약서(표준)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수면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사용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임차한 수면을 ○○○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다.

제2조(사용범위) “을”이 사용할 수 있는 수면의 장소 및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을”은 사용구역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표 등을 설치 표시하여야 한다.

저수지(댐)명	소재지	만수면적	사용면적	사용범위(위치)	사용제한구역
		m ²	m ²	붙임도면참조	

제3조(임대차기간) ①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년 월)까지로 한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능이 폐지되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은 이 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한 시설이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잔여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을”이 계속하여 위 표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일반임대차로 전환하여 신규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기구 및 설치시설) ① “을”이 사용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및 설치시설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모	수 량	비 고

② “을”이 제1항 이외의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는 “갑”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인·허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을”은 수면의 목적 외 사용에 필요한 면허,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허 또는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임차한 수면을 제4조에 정한 시설을 이용하여 제1조에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 이외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을”은 「내수면어업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규정된 불법어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행위금지)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시설(수면)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고객에게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단속하여야 한다.

- 1. 사용목적 이외의 행위
- 2. 제4조에 정한 시설 외 “갑”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변경
- 3. 임차 시설(수면) 및 사용권의 전대행위 또는 양도
- 4. 새로운 권리의 설정 및 이전
- 5.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및 용수공급 등 시설고유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 6. 제당석축 및 여수토와 “갑”이 제한하는 구역에서의 주차 및 낙시 행위

제7조(사용료 부과 및 납부 등)

<사용료 일시불 계약의 경우 적용>

- ① 1차년도의 임차사용료는 금○○○원(₩ 원)으로 한다.
- ② “을”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시설부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차료를 일시납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③ 2차년도 부터의 사용료는 매년_____방법에 따른다.(공개입찰에 의한 계약시는 “낙찰금액으로 한다”로 교체 사용)
- ④ “갑”은 2차년도 부터의 임차료를 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납부일로 하여 납부기한 30~15일 이전까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을”은 “갑”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대상 사용료에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일수에 다음 각 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더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10%

<사용료 분할납부 계약의 경우 적용>

① 1차년도 임차사용료는 금○○○원(₩000,000원)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회 분할하여 다음과 같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납부금액(원)	납부기간	비 고
1회차		계약체결일	
2회차		년 월 일	
3회차		년 월 일	
4회차		년 월 일	

③ 2차년도 부터의 사용료는 매년마다_____방법에 따른다.

④ “을”은 제3항의 방법으로 산출된 2차년도 부터의 임차료를 매년 1회씩 “갑”이 정하여 통보한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차년도 이후에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1회차는 매 계약일까지, 2회차 부터는 제2항에서 정한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매 계약일 2개월 전에 “갑”에게 분할납부하겠다는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이 2차년도 이후에 임차료를 일시납으로 선납할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매 1년 이 되는 날을 납부일로 하여 납부기한 30~15일 이전까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대상 사용료에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일수에 다음 각 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더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10%

제8조(임대보증금) ① “을”이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증서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선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라 한다)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갑”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그 밖에 담보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임차료 감면 등) ① “갑”이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재해예방,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 당시 “을”이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시설투자비 보다 적은 수입을 얻은 것이 증명될 때에는 “갑”은 “을”의 신청에 따라 임차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가뭄,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을”이 사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을”은 “갑”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임차료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료는 일할 계산하여 감면한다. 다만, “을”은 “갑”에게 그때까지의 적자나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사용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설물의 설치 등) ① “을”은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시설물 설계도서를 사전 “갑”과 협의를 거쳐 실시하고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을”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시설부지에 설치한 “을”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조치 및 수질·환경보호 대책을 강구·실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설치 사용한 폐어망은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폐어망을 수거하지 않아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재임대 불허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갑”의 허가를 받아 “을”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갑”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시설물 설치가 허가 및 계약내용과 일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갑”의 승인으로 시설을 투자하거나 비용을 지출할 경우 “을”은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물설치 완료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은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수입 및 지출금액 증빙자료를 작성 비치하고, “갑”의 요청시 관련 서류를 제시 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 등) ① “을”은 “갑”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시설부

지를 선량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파손, 훼손, 형질 변경 또는 심각한 수질오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의 요청에 따라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을”이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갑”의 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시설부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갑”은 “을”을 대리하여 “을”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이 설치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손해배상 등의 제반문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안전조치 등) ① “을”은 긴박한 한해대책, 홍수조절에 따른 댐 관리 및 수문 조작과 하구둑 방호 계획에 따른 조치 및 불법 수면사용자 단속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을”의 안전조치 소홀 및 어로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익사사고 등 인명 사고와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을”이 책임을 진다.

③ “갑”은 제1항의 댐관리·수문조작등은 그 사실을 미리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3항의 통보를 받는 즉시 시설물의 이동·철수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보호 및 수질오염방지 등) ① “을”은 사업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수질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수질검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환경정화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철저히 준수를 하여야 하며, “갑”은 동 계획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임대 불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임대시설 주변 환경정화 계획
2. 수질오염감시 활동계획
3. 낚시업 또는 내수면어업의 경우 어류먹이 투입량 저감계획 등
4. 수상좌대가 설치된 시설의 경우 분뇨(糞尿) 등 처리 계획
5. 내수면어업(면허·허가) 중 자망, 각망, 삼각망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후관리 및 폐어망 수거계획 등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시료의 채취는 반드시 “갑”과 “을” 및 지역주민(수질관리협의회) 입회하에 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취된 측정시료에 대한 수질검사의뢰는 “갑”이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농어

촌용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분기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자체 수질관리계획에 따라 동 수면(저수지, 댐 등)에 대하여 수질검사(수질측정망조사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 수질검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은 총유기탄소량(TOC),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량(SS) 등을 실시한다. 다만, 목적 외 사용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사용자에게 추가 할 수 있다.

1. 중금속 오염 : 납(Pb), 카드뮴(Cd), 비소(As), 구리(Cu), 수은(Hg), 아연(Zn)
2. 유류오염 : BTEX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TPH(Total Petrollum Hydrocarbon)

⑤ “을”이 제3항 단서에 따라 “갑”이 실시한 수질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과 “갑” 및 지역주민(수질관리협의회)이 공동으로 물 시료를 채수하여 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제3항 본문, 제4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년평균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IV등급을 2년 연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만료 전 사용자에게 예고하고 계약만료 후 허용수질기준을 달성할 때 까지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계약해지) ① “갑”은 본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갑”과 “을”이 협의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기간에 면허 또는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4. 사용자 선정 및 계약행위 일체와 관련 금품수수 또는 향응제공 등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을”이 본 계약서상의 계약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고유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

6. “을”이 본 계약과 관련된 실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을”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8.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9. 제10조제5항의 수입금액 증빙자료를 “갑”이 요청하였음에도 “을”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축소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하는 1년 이내에 발전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1.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12. 내수면어업계가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해당되어 해산된 경우

② “을”은 본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와 “갑”과 “을”이 협의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2. “을”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멸실로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3. “을”이 사망, 피한정후견, 피성년후견, 질병, 징집, 취학, 복역 등으로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제15조(위약금)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 연간 목적 외 사용료의 10%(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하는 1년 이내에는 10%, 2년 이내에는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 제1항 제2호 ~ 제10호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을”이 중도계약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16조(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철거·훼손 등) ① “을”은 홍수 등 긴박한 재해 발생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재해예방을 위하여 “을”이 설치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을”의 안전조치 이행이 없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이 설치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갑”이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을”은 “갑”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연고권주장금지) “을”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결된 경우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8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① “을”이 목적 외 사용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 할 경우, “을”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금○○○원(W 원)을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원상회복예치금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예치한 원상회복예치금을 계약의 종료·해지 후 “을”이 원상회복을 하는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갑”은 원상회복예치금을 사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갑”이 시설물을 철거 등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원상회복예치금 중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을”에게 반환하고 정산액이 부족할 때에는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산 부족액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임대차물건의 반환 등) ① “을”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되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을 기부채납 할 수 있다.

② “을”은 계약 해지 및 기한 경과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을”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신규사용자가 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조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갑”과 “을”간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20조(통지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3.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항

② “을”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을”이 부담으로 한다.

제21조(통지의 효력) ① “갑”은 “을”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그 밖에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이 제20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 또는 그 밖에 서류가 “을”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수면사용구역) ① “을”의 수면사용구역은 ○○○과 ○○○를 연결하는 선의 ○○부에 한정하며, “갑”의 형편상 어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을”은 ○○○ 사업의 선박운행에 지장이 되는 구역(○○○나루로부터 호심중앙폭 (○○)미터의 넓이로 ○○○과 ○○○까지 연결하는 선 이하 전수면)과 양수장 취입구로부터 (○○)미터 이내 수역 및 ○○○지역으로부터 (○○)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

제23조(관계서류 제시 등) “을”은 관련어업의 시설물이나 어구의 관리 및 수입액 파악을 위하여 “갑”의 요청이 있으면 관계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현장확인을 요구할 시는 입회·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보 안) “을”은 “갑”이 정한 보안 구역(저수지, 하구둑, 배수갑문)이 국가보안목표시설임과, 조작 시 극히 위험함을 유념하고 관련 어업의 시설이나 장비운영에 있어 보안 시설 및 위험시설(배수갑문등)에서 떨어져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조업하여야 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폭발물 휴대행위를 할 수 없다.

제25조(부대조건) “불임과 같음”(부대조건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제26조(협 의) 본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갑”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을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관할법원의 합의) 본 계약 이행에 있어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및 부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법원으로 한다.

제28조(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안전관련법을 준수하여 점검,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조치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손해배상 등 제반사항은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가 민법 등 기타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손해 배상으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본 계약에 관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계약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특 약 사 항

계약서 본문에 없는 부대조건을 기재

“갑” ○○○도 ○○시· 군 ○○읍·면·동 ○○리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단(지사)장 ①

“을” ○○○도 ○○시· 군 ○○읍·면·동 ○○리
주민등록번호
○ ○ ○ ②

용수사용 계약서(표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호(○○저수지)의 담수를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업(생활)용수를 사용토록 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단장(○○지사장)을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다음 조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담수호(저수지)의 용수를 제공하고 “을”은 공업(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① “을”은 공업(생활)용수의 사용을 위한 양수·송수시설 등 제시설의 설치 또는 개보수를 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사전 제출하여 “갑”의 서면허가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양수·송수시설과 관련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양수·송수시설 등 관로매설 이외의 부지에 대하여 “갑”의 동의 없이 파손, 훼손, 형질변경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을”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 ○○○○년○○월○○일(○년○월)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갑”과 “을”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제4조(용수공급) ① 용수의 공급은 000㎥/일 (00,000㎥/년)간 공급한다. 단, 초과 사용시는 저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갑”은 관개전반기(4~6월)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용수 공급량을 줄여 공급 할 수 있으며, 매일 15일 기준 평년저수율의 60% 이하일 경우 용수 공급을 중단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그 사유를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생활용수와 하구담수호 공급용수의 경우 >

② 해당시설 평년저수율의 40% 이하일 경우에는 “갑”은 “을”과 협의를 거쳐 공급량을 줄여 공급 할 수 있다.

③ “갑”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생활용수·공업용수 등 수질의 적정여부는 “을”이 판단하여 조치한다.

제5조(계량기 설치) ① “을” 목적 외 용수공급 시설에 대하여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한국공업표준규격이나 공인된 국제공업표준규격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의 계량기를 취수장 등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의 설치·개조·수리·검정·교정 등에 대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공사와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검정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계량기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검정을 필한 계량기로 교체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기관의 재 검정을 받아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 사용자와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사용량 측정) ① “을”은 매일 측정한 용수의 사용량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갑”은 매월말일 사용량을 확인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③ “을”은 계량기의 고장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계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계량기 고장시는 고장전 정상 계량된 3개월간 사용량의 1일 평균량에 고장기간 일수를 적용한다(최초 사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사용기간의 사용량에 1일 평균량을 적용). 다만, 계량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수한 사실이 발견될 때는 양수기 성능의 최대 양수량으로 계량기 고장기간동안 계속 가동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료 산출) ① 용수사용료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한국농어촌공사 정관 제50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 제27조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 개정시에는 별도 협의 후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② 사용량을 계산함에 있어 1톤 미만은 사용량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톤당 단가 산출은 소수점 두자리까지 적용하고 사용료 고지액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③ 양수·송수시설 등과 관련한 “갑”의 부지를 사용할 경우 연간사용료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면적에 대한 공시지가 또는 토지감정 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 부과와 납부) ① “갑”은 매월말 용수사용량을 확인하여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을”은 부과일로부터 15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이 부과한 금액을 “을”이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대상 사용료에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일수에 다음 각 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부과하며, “을”이 사용료와 연체료를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용수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10%

③ 양수·송수시설 등 부지의 사용료는 “갑”의 부과에 따라 “을”은 연간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한다. → (시설부지를 사용할 경우 적용)

제9조(수질오염 및 환경보호) ① “을”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물(○○○)에 수질 및 환경오염이 될 경우에는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미비 등 “을”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계약 해지) ① 갑”은 본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갑”과 “을”이 협의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한 경우
2. 계약목적 이외로 사용 또는 운영할 경우
3.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1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조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계약사항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거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갑”의 부지로부터 철거 또는 철수하여야 한다.(단, 상호이익을 위하여 협의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갑”의 부지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복구 및 보상) “을”이 설치한 시설물로 인하여 “갑” 또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저수지 관리협조) “을”은 담수호(저수지) 제시설 방호 및 용수의 관리상 불가피하게 행하는 배수갑문 및 수문조작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물 시공에 따른 준수사항) ① “을” 양수·송수시설 등 관로 매설을 할 경우 착공전 및 준공시 “갑”에게 이를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양수·송수시설 등 관로매설의 시공상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갑”과 사전협의 처리한다.

③ 양수·송수시설 등 관로매설 공사와 관련 제반사고의 발생(공사상 안전, 기존 시설물의 보호, 교통, 통신, 기타 기기훼손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한다.

④ “갑”은 “을”의 시설물 및 기존시설물 관리상태를 공사전·후에 현장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시설철거 및 이설) ① “갑”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정부 사업계획 등 불가피 할 경우 시설의 철거나 이설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이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나 이설을 요구하였음에도 “을”이 이행치 않을 경우 “갑”이 시설물 철거나 이설을 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양수할 수 없다.

제16조(부대조건) “불입과 같음”(부대조건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제17조(협 의) 본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갑”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을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관할법원의 합의) 본 계약 이행에 있어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및 부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법원으로 한다.

제19조(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안전관련법을 준수하여 점검,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조치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손해배상 등 제반사항은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가 민법 등 기타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손해 배상으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있다.

기부채납서

1. 기부 재산의 표시

○ 토지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유자		토지 등급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동리				주소	성명		

○ 시설물

시설명	소재지				지번	시설규모	가액 (설치비)	소유자	
	시도	시군	읍면	동리				주소	성명

2. 기부 목적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3. 재산의 가액 : 금 원(₩)

4. 기타사항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위 표시 재산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대체시설로 귀 공사에 기부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부자 - 주소 :

성명 또는 상호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사업단장) 귀하

5.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사용허가 불허가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 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목 적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2.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6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제3호(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

3. 수집·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사용허가 업무 최종 종결 시까지
- 사용허가 업무 공공기관 청렴도 및 자체 청렴도 측정·평가 시 : 측정·평가기간

4.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사용허가 불허가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고유 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인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사업단장) 귀하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 연락처 :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